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. 7. 7 선고 2020가단84712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 등]

---

### 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2. 5. 12 선고 2021나215313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. 7. 7 선고 2020가단84712 판결

### 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주원

담당변호사 송유준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

담당변호사 박세웅

변 론 종 결 2021. 6. 23.

판 결 선 고 2021. 7. 7.

### 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93,969,209원 및 이에 대한 2018. 6. 10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#### 가. C회사의 구조

1) C회사는 말레이시아에 본사가 있는 투자회사로서, C회사에서 만든 'D'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(싱글 650만 원 / 골드 1,950만 원 / 플래티늄 4,550만 원)을 구입하면 투자 금액에 비례한 가상화폐인 E가 지급되고, E의 55%는 현금화하여 지급하며, 30%는 E 재구매에 사용되고, 10%는 수수료로 C회사에서 가져가며, 5%는 제휴 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한 가상화폐인 F이라는 것으로 지급이 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. 나아가 E는 증식하는 과정을 6회 거치면 C회사 본사에서 수익의 60%를 G라는 암호화폐로 지급해 주는데 이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, 이 중 30%는 H라는 쇼핑 포인트로 지급하며, 10%는 수수료로 C회사에 지불하게 되는 구조의 투자이다.

2) C회사의 투자자 모집 관련 수당지급 구조는 회원이 된 후 하위사업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의 6-10%에 해당하는 '추천수당'을 지급받고, 본인의 모집한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서로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-10%에 해당하는 '관리수당'을 지급받고,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%를 '매칭수당'으로 지급받게 되는 구조로서 '회원 - 1대 하위사업자 - 2대 하위사업자 - 3대 하위사업자 - 4대 하위사업자 - 5대 하위사업자 - 6대 하위사업자'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 다단계판매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는 금융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한다.

#### 나. C회사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

C회사가 수행한 국내에서의 활동이 속칭 무등록 금융피라미드 다단계 조직이자 그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(대법원 2020노61).

#### 다. 원고와 피고의 관계

원고는 피고를 통해 C회사 투자 방식에 대하여 알게 되어 위 C회사에 가입하였고, 피고에게 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C회사에 투자를 하였다.

[인정근거]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,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 2.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

#### 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1)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C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을 피고가 중간에서 횡령하였다.

2) 피고가 C회사를 운영하는 일당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.

#### 나. 판 단

살피건대, 1의 증인진술서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C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가 C회사를 운영하는 일당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 역시 원고와 같은 C회사에 대한 투자자로서 단지 원고보다 상위자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을 뿐 금원의 손실을 입은 동일한 피해자에 해당할 뿐이고(피고가 다소 적극적으로 회원 즉 투자자 모집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다단계 내지 피라미드식 상품판매에 가입한 사람들의 근본적인 활동 모습에 해당할 뿐 이를 두고 해당 조직의 운영자와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), 원고로부터 받은 돈 역시 모두 C회사

측의 소외 J과 K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전달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.

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.

### 3. 결 론

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판사 이도식